

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41호
----------	------

2018. 7. 26.

건명	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(전략기획실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8. 7. 12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8. 7. 12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-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,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청년의 권익 보호와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청년정책의 수립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기본이념, 용어의 정의, 시장의 책무 등 규정(안 제1조~제4조)
- 나.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다. 청년정책위원회설치 및 구성,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7조)
- 라. 청년정책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19조)
- 마.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)
- 바.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1조)

□ 검토의견

-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,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청년의 권익 보호와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청년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거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